

도시관리계획(영등포1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24호(2016. 10. 20.)로 결정(변경)된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획지계획(공동개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4월 11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가. 결정(변경) 취지

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개발(지정)에 관한 획지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.

나. 도시관리계획(영등포1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○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-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동 (가구번호)	기 정				변 경			비고
	위 치	면적(㎡)	획지계획		위 치	면적(㎡)	획지계획	
영등포동가 (다-5)	66-18대	86.9	-	공동개발 (지정) 조건부	66-18대	86.9	-	공동개발 (지 정)
	66-17대	28.8	-		66-17대	28.8		
	66-14대	85.0	공동개발 (지 정)		66-14대	85.0		
	66-12대	99.2		-	66-12대	99.2		
	66-13대	8.9		-	66-13대	8.9		
	66-15대	100.2		-	66-15대	100.2		
	66-16대	9.3		-	66-16대	9.3		
	66-19대	104.8		-	66-19대	104.8		
	66-20대	9.3		-	66-20대	9.3		
	66-11대	83.6		공동개발 (지 정)	69-4대	77		
	66-10대	25.5	-		69-5대	22.1		
	66-7대	81.7	공동개발 (지 정)		69-6대	86.9		
	66-8대	104.8			69-8대	32.1		
	66-9대	10.2			69-9대	51.9		
	69-4대	77	공동개발 (지 정)	-	66-11대	83.6	공동개발 (지 정)	
	69-5대	22.1		-	66-10대	25.5		
	69-6대	86.9		-	66-7대	81.7		
	69-8대	32.1		-	66-8대	104.8		
	69-9대	51.9		-	66-9대	10.2		

○ 기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한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.

다. 관계도면: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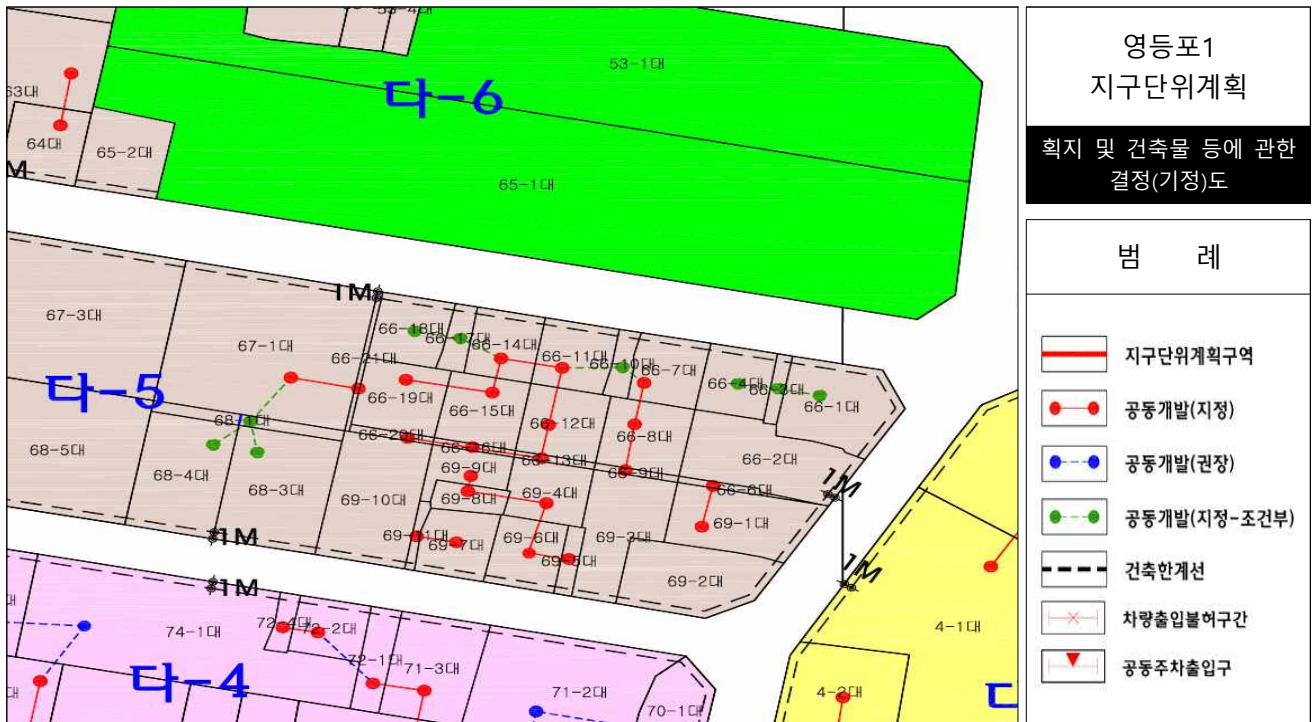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공보에 고시를 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라. 열람장소: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(☎ 2670-354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도시관리계획(영등포1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

○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(기정)



○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(변경)

